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197호
- 나. 발 의 자 : 이광호 의원(찬성자 9명)
- 다. 제안일자 : 2022년 5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택시는 필수교통수단인 대중교통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탈 수 있는 선택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음.
- 일반택시(중형) 요금은 서울시의 운송원가 검증용역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정책위원회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함에도 또다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심의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함.

- 택시는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택시의 경우 요금을 신고만 하도록 자율화 되어 있고, 2020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가맹택시도 요금을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중형택시 요금만 신고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규제되어 관련법 상 신고제인 상위법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요금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택시요금을 제외함으로써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택시요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택시요금

-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1994.3.15.)¹⁾되었으며,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고급형을

1) 서울시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을 자문하기 위해 공공요금심의위원회(1989~1994)를 두고 있었으나 내무부 지침

제외한 택시, 도시철도 요금), ▶ 도시가스요금, ▶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사용료 등의 지방공공요금이 심의·자문 대상임.

- 공공요금은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을 말하며, 정부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지정하고 있음.
- 당초 택시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이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 제정²⁾되면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금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됨(1997.12.23.).
- 그러나 「여객자동차법」의 하위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은 택시의 운임과 요금을 관할관청(서울시)이 정하도록 하여 사실상 요금 인가제로 기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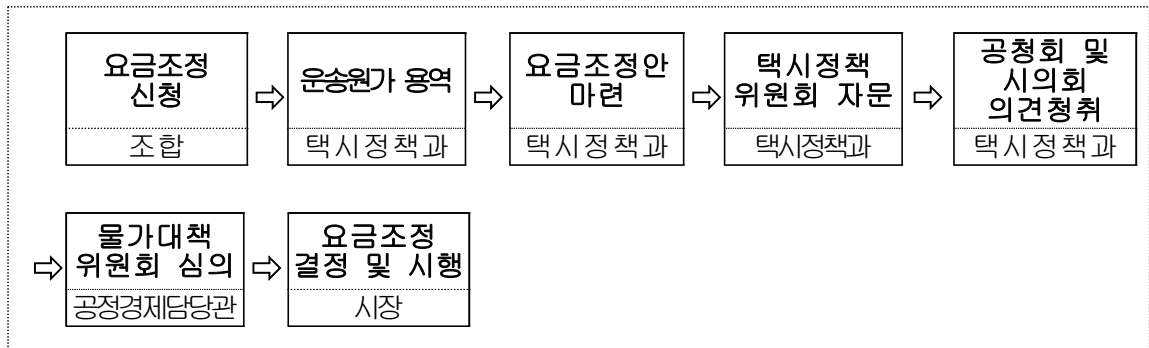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제3조(운임·요금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3.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운송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 정액운임제(특정 시간 동안 택시사용의 대가를 정액으로 수수하는 운임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으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준칙’을 배포하면서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로 변경되었음(1994.3.15.).

-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제정됨(1997.12.13.).

- 이후 고급형 택시와 대형택시는 요금심의 없이 사업주가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5.9.21.)되고, 플랫폼 가맹택시는 자율요금제 실시를 위해 「여객자동차법」을 개정(2020.4.7.)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서울시 택시요금은 ▶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조정 신청, ▶ 운송원가 용역³⁾, ▶ 요금조정안 마련, ▶ 택시정책위원회 자문, ▶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 여러 단계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있음.

<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절차 >



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택시요금 제외의 적절성

- 개정안은 ▶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선택적 교통수단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 택시요금은 택시정책위원회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 대형택시와 고급형 택시, 플랫폼 가맹택시와 달리 일반택시만 사실상의 인가제로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에 따라 2년마다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는 용역.

요금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택시요금을 제외하고 있음.

- 택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고, 배제불가능성과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나 국민 필수재로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서울시의 통제 하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두고 있고,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물가상승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최근 10년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택시요금을 제외하더라도 운송원가 용역과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요금산정은 가능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규정한 버스나 지하철 요금과 달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택시요금을 제외하게 되면,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사라지게 되어 서울시의 판단만으로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에 대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를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면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요금 관리 의지를 약화시키고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법령과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공공요금에 해당하는 택시료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참고자료].
- 따라서 택시요금 결정과정 개선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물가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한편,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번호가 오기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8조----- ----- ----- ---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참고자료]



행 정 안 전 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정경제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1.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24796호(2022.6.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일 '22.5.25. 발의자 이광호 의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택시료 물가대책위 심의대상 제외(서울시) 관련 검토의견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관

이상로

지역일자리경쟁력 2022. 6. 13.

제과장

한치흠

협조자

시행 지역일자리경쟁력-2096 (2022. 6. 13.) 접수 공정경제담당관-25441 2022.06.13.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921 팩스번호 044-204-8973 / ls10901@mail.go.kr / 대국민 공개

택시료 물가대책위 심의대상 제외(서울시) 관련 검토의견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명)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발의일/발의자) '22. 5.25. /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개정이유) 택시요금(중형)은 택시정책위원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침에도 다시 물가대책위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
 - 대형승합·고급택시의 경우 요금을 신고만 하나 일반 중형택시요금만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신고제인 상위법 취지에 불부합
- (개정내용) 물가대책위 심의내용에서 택시요금을 제외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u>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도시철도요금)</u>

□ 검토의견

- 물가안정을 위한 법령*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공공요금에 해당하는 택시료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공공요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으로서,

-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물가정책 총괄부처인 **기재부장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물가안정법 §4①)